
「교통법규 위반자 처분 개선 단계적 시행」 정식 운영 계획



경 찰 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법규 위반자 처분 개선 단계적 시행」 정식 운영 계획

지난 상반기 실시한 '1년 내 위반이력이 없는 최초위반자에 대한 계도·경고처분' 시범운영 종료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식운영 실시

1 추진 배경

- 일관된 법집행, 수용성 제고를 위해 '1년 내 위반 이력이 없는 경미 위반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계도'하는 개선계획 수립·시행*
* '24. 1. 1. ~ 6. 30. <6개월간>
-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무분별한 신고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6개월간 시범운영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시행 여부를 검토

2 그간 추진 개요

□ 시범 운영

- '24. 1. 1. ~ 6. 30. <6개월>

□ 운영 내용

- 적용 대상: 위반일 기준, 이전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운전자
※ 면허벌점의 경우 1년 경과 시 벌점의 효력이 없어지며, 착한운전 마일리지 또한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점을 고려
- 이전 1년간 위반이 없을 시: 계도·경고 처분
- 이전 1년간 위반이 있을 시: 통고처분(또는 과태료) 처분
- 적용 범위
- 공익신고 제보 건 중 위험성·중대성이 낮은 경미한 위반 행위
※ 법인 및 렌트카는 소유주 변경 등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
- 도교법 위반 중 교통법 상에도 규정된 12개 위반항목*은 제외

< 처리 기간 >

- 계획안 시행 이후 6개월간 제보 건을 처리하는데 월 평균 24.1일이 소요되는 등 전년 동기간 대비 17.8일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전년과 비교 시 제도 및 시스템의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산출된 월 평균 처리 일수만으로는 제도 시행 후 제보 건 처리 소요 일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 제보창구 통합운영(신문고 연계 중단) △ 최초 위반자에 대한 경고처분
△ 범칙금항목에 대한 일괄 경고처분 등

【최초위반자 경고처분 등 제도 개선 전·후 평균 처리소요 기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실프 (일)	안전 (일)	실프 (일)	안전 (일)	실프 (일)	안전 (일)	실프 (일)	안전 (일)	실프 (일)	안전 (일)	실프 (일)	안전 (일)
2024년*	20.8	9.5	17.3	12.5	12.8	15.6	-	19.2	-	20.8	-	16.2
2023년	14.6	1.0	14.1	1.1	13.8	1.4	16.3	1.5	19.0	1.7	20.9	1.8
대비	+6.2	+8.5	+3.2	+11.4	-1	+14.2	-	+17.7	-	+19.1	-	+14.4

* '24. 3. 11. ~ 안전신문고 통합운영에 따른 스마트국민제보 운영 중단

< 온라인 민원 >

- '1년 내 위반이력이 없는 자에 대한 1회 경고처리' 제도와 관련된 민원은 228건이 접수되는 등 공익신고 관련 민원의 54.3%를 차지
 - △ 훈방권(계도·경고)처분의 근거 △ 무조건적인 봐주기 △ 경찰의 범법자 양산
△ 처리자 ↔ 위반자간 유착관계 의심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
- 다만, 계도·경고처분에 대한 관서별 통일된 기준이 마련, 초행길 운전자들의 입장이 고려 되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됨

【경찰청(교통안전과)로 접수된 월별 공익신고 관련 민원처리 건수】

구분		전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국민 신문고	전체민원(건)	330	46	34	59	53	37	68	33
	제도관련(건)	190	19	20	38	25	23	44	21
	비율(%)	57.6%	41.3%	58.8%	64.4%	47.2%	62.2%	64.7%	63.6%
정보공개 청구	전체민원(건)	90	18	15	12	12	13	6	14
	제도관련(건)	38	4	10	5	6	9	-	4
	비율(%)	42.2%	22.2%	66.7%	41.7%	50.0%	69.2%	-	28.6%

< 내부 의견 >

- 시행 초기 무조건적인 경고처분으로 민원이 급증할 거란 우려와 달리,
 - △ 처분결과에 대한 높은 수용성 △ 최초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즉각적인 제도·경고조치로 처리 체감속도 향상 △ 유연한 민원 응대 등 계획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정식 운영되기를 희망

< 주요 성과 >

- 최초위반자 대상 1회의 제도·경고 처분은 재범자가 감소하는 등 제도를 계획·수립한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가 확인되나,

【 최초 제도·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으로 접수된 현황 】

구분	1회(최초)	2회	3회	4회	5회 이상
2024 1. ~ 6.	324,002	40,391	9,264	2,876	4,356
2023. 1. ~ 6.	251,745	247,392	80,726	77,753	118,259
대비(%)	+72,257 (+28.7%)	-207,001 (-83.7%)	-71,462 (-88.5%)	-74,877 (-36.9%)	-113,903 (-96.3%)

※ 최초 위반으로 제도·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계산출일(7. 31.) 內 재차 위반으로 접수된 경우임

-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하여도 여전히 제도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제보자가 제도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

【 최초 제도·경고처분 받은 자에 대하여 재차 경고·제도처분이 이뤄진 현황 】

구분	1회(최초)	2회	3회	4회	5회 이상
2024 1. ~ 6.	324,002	16,870	3,944	1,234	2,425
2023. 1. ~ 6.	251,745	243,350	36,715	34,431	33,403
대비(%)	+72,257 (+28.7%)	-226,480 (-93.1%)	-32,771 (-89.3%)	-33,197 (-96.4%)	-30,978 (-92.7%)

※ 최초 위반으로 제도·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계산출일(7. 31.) 內 재차 접수되어 제도·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임

< 분석 결과 >

- 시범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 만큼, 하반기에도 제도를 정식으로 운영하되,
 - ‘제도·경고 처분’이 횡수 제한 없이 계속 이뤄지는 점은 본 제도에 대해 제보자의 수용성이 낮아지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제도·경고 처분에 대해 일부 수정·보완 후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

4

세부 시행 계획

□ 개선 방향

- 시범 운영기간 중 실시하였던, ‘1년* 內 위반이력이 없는 최초 위반자에 대한 계도·경고처분’은 지속 시행하되,
 - * 위반이력을 카운팅 하는 시점은 시범 운영기간을 포함한 '24. 1. 1.을 기준으로 함
 - ※ 다만, 이는 처분에 있어 대원칙으로, 업무담당자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 등 고위험행위에 대해 위험성 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도·경고 처분 없이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자 차량번호 및 위반일 기준 1년 內 ‘계도·경고’ 처분의 횟수를 최대 3회**로 한정
 - ** 과거 음주운전 3진 아웃(3회째로 확인되는 경우 면허취소) 제도를 착안한 것이며, 계도·경고처분에 있어 동일한 유형의 위반에 한정하지 않음
- 시범운영 당시 ‘1년 內 최초 위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12대 중과실 위반’도 포함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체로 확대 적용
- 다만, 경고처분의 횟수제한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같은 날 발생하는 여러 건의 위반은 계도·경고처분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TCS 시스템상 1건*으로 산정
 - * 피신고자 하루에 여러 관서에서 여러 건의 ‘계도·경고’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제도와 관련되어 시스템상 1번의 경고로 카운팅
- 그 외 업무처리 과정에서 ‘본 개선안’을 벗어나는 사례 등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공익신고 제도개선 TF」를 통해 보완책 마련

5

향후 계획

-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현장 의견을 반영, 신속히 보완 후 시행('24. 11. 18. ~)
- 개선안 시행에 따른 일괄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원답변 표준안 마련과 함께 각 시·도경찰청 공유